

「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 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」 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석탄, 광석, 모래 등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는 살화물의 경우 화차계중장치를 이용하여 축중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나, 살화물을 취급하는 역 중 화차계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5개역이 추가로 확인되어 철도운영자가 2025년 3월까지 설치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화차의 축중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(부칙) 신설

화차계중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살화물을 운송하는 화차의 축중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25년 3월까지 축중을 측정할 수 있는 화차계중장치를 설치토록 경과규정 신설

## 2. 의견제출

이 「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 6. 26일 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| 현    행 | 개   정   안 | 의    견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5동, 우편  
번호 30103)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 
(전화 044-201-4620, 4890)